

제41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23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6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01)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61)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70)
10.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5)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4)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9)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82)
1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51)
1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2)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7)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88)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추가)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69) 3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0) 4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01) 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61) 4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70) …… 4	
10.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5) …… 4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4) …… 4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9) …… 4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82) …… 4	
1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51) …… 4	
1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2) …… 4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7) …… 4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88) …… 4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홍성국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 6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 6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 6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백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백혜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사임·보임 및 당적 변경 등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412회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홍성국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신 강민국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소위원장님들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3년도 국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수석전

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마련된 안입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1시11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혜련 예.

○김종민 위원 자료 요청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백혜련 예, 자료 요청부터……

김종민 위원님 3분 드리세요.

○김종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자료 요청 드릴게요.

오늘 자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국무조정실에서 하는데 이게 야당 때문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최근 국조실이 부처 감사 담당 조직에다가 공직기강 특별점검 추진계획안을 송부를 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강 점검을 하고 다음 달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가 세종시에서,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유권자가 많으니까, 세종시에서 여당이 많이 저 지고, 공무원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복 감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어야 마땅한데 감사 내용에 보면 이게 근태 관리 정도가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나 정책 이행 전반에 대한 정성평가가 많이 담겨 있어서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보복 감사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세종에서 출마를 했는데 현재 국정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판적인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감사나 수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원장 백혜련 김종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공직기강 특별점검 추진계획안 이것 부처에 송부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감사했던 진행 개요를 사안이라든가 대상자 그다음에 처분 결과가 있다면 처분 결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개요를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국무조정실장님,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6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01)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61)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70)

10.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5)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4)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9)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82)

1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51)

1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02)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27)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88)

(11시15분)

○위원장 백혜련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 존경하는 정무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매년 이런 건들이 2만여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현찰로 직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 처하면 경제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생활비통장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서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서 1개의 생활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적으로 그 초과분을 다른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안을 심사하시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등 4개 소관 13건의 법률안 중 일

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자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순직군경 등의 선순위 유족에 대한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선순위 유족이 나이에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위탁 의료기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75세 미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및 추가적인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이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비 압류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의 적용 확대 필요성 여부, 생계비계좌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 등을 받아 피해가 원상회복된 경우와 설명의무 위반자가 영세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불과하는 과태료 총액의 상한을 두려는 것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유인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영세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과태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로 인한 과태료 부담 경감과 현행 규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감

경의 가능성, 설명의무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1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백혜련 의사진행발언.

○홍성국 위원 오늘 전체회의 중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건의 안건을 추가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먼저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직회부를 요청한 지금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입니다. 이것 절차 면에서도 잘못됐고 내용 면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그리고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그리고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가짜 유공자를 걸러 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유공자의 공적과 명단도 사실 감감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 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도 있는지 이런 심사한 번도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이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다음에 홍성국 간사님.

○홍성국 위원 최근에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을 했고요. 국가보안법·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를 했고 또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대부,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특히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소상공인과 중

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2개의 법안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홍성국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11시26분)

○위원장 백혜련 지금 홍성국 위원님께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를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세 분의 추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11시27분)

○위원장 백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제19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2023년 12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여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였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제19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투표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 2장을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서 각각의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한규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투표개시)

저도 투표하고요 그다음에 감표위원님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합하시고요 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합)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5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먼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의사일정 제18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의사일정 제19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1 (13인)	◎홍성국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6)
	강민국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국민의힘(5)
	김종민 김희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법안심사제2 (11인)	홍성국 강훈식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6)
	◎강민국 송석준 윤창현 최승재	국민의힘(4)
	양정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 (8인)	◎김성주 김한규 오기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4)
	윤주경 최승재	국민의힘(2)
	김희곤 황운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청원심사 (6인)	민병덕 이용우 최종윤	더불어민주당(3)
	◎송석준	국민의힘(1)
	강성희 조응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강민국	강성희	강훈식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백혜련	양정숙	오기형
이용우	최종윤	홍성국	황운하

○청가 위원(2인)

윤창현 조응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권현진
전문위원	박태혜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방심	기종	선섭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국무총리비서관	이충		현
정무협력비서관			
국가보훈부			
장관	강이오	정남진	애일영
기획조정실장			
보훈정책실장	황희	병완	균
보상정책국장	최한	상제	균
복지증진국장	이		북
보훈의료심의회관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전	기성	정북
기획조정관	남박	동세	일민
경쟁정책국장	선	중	규
소비자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박	철종	환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안정	준재	호일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권	주대	현영
사무처장	유	영	준
기획조정관	김	진	창
금융소비자국장	신	진	창
금융정책국장	안	창	국
금융산업국장	박	민	우
자본시장국장	김	동	환
구조개선정책관	김	기	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이	학정	수렬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고	은	영

개인정보정책국장

양 청 삼

【보고사항】**○의안 회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4. 3. 8. 최승재 · 배진교 · 최재형 · 김근태 ·
김희곤 · 김종민 · 윤주경 · 양정숙 · 최영희 ·
김예지 의원 발의)

3월 11일 회부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

(2024. 3. 27. 양경규 · 윤미향 · 강성희 ·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 박용진 · 이자스민 · 심상정 ·
김주영 의원 발의)

3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

(2024. 3. 27. 양경규 · 윤미향 · 강성희 ·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 박용진 · 이자스민 · 심상정 ·
김주영 의원 발의)

3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국무조정실	-	-	-	-	-	-
국가보훈부	1	-	4	4	-	2
공정거래 위원회	1	-	-	1	-	-
국민권익 위원회	-	1	-	6	2	1
금융위원회	-	-	-	-	-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1	1	-	4	-	4